

긴급 입찰 공고 사유서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시스템[로봇심판] 운영
- 나. 사업예산 : 250,000,000원 (부가세 및 기타비용 모두 포함)
-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31.까지

2. 긴급 입찰 사유

가.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과 5항

-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제5항)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 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나. 사유

- 전국고교야구대회 개막(3월 중) 판정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과업 기간 부족에 따른 공백 최소화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확보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긴급입찰을 실시함.

2025. 2. 7.

대한야구소프트볼협

